

# 공공대학원 계약학과 내규

시행: 2019. 9. 1.

## 제1장 총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교육부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이하 "대학원 학칙"이라 한다)」 및 「공공대학원내규」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이하 "본대학원"이라 한다)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학과의 종류) 본대학원은 산학협력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 등과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2.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제3조(학과 및 학생정원) ① 모집학과는 공공대학원 일반전형의 학과를 모체학과로 한다.

② 학생정원은 제2조 2항에 따른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총정원제)의 100분의 20이다. 다만,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총정원제)의 100분의 50까지 모집정원 확대는 산업체 인력수요의 시급성·중요성,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

제4조(계약학과 설치 권역) ① 본대학원과 산업체 등이 산학협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기준)인 경우로 한다. 다만,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대학원과 동일한 '권역'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권역' 내의 계약으로 본다.

② 제2조 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제5조(계약학과의 설치) ① 계약학과는 공공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하며,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서(이하 "운영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전근·퇴직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산업체 등의 학생 전근·퇴직 통지의무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 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③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부처,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체 등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제7조(설치·운영기간)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본대학원과 산업체 등 간에 체결된 운영계약서에 따른다.

- 제8조(지원자격 및 선발)① 제2조 제2호의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일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② 계약학과에 (편)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체 등의 추천서
  2. 근로계약서
  3. 재직증명서
  4. 4대보험 가입증명서
  5.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정징수부로 대체 가능)
  6.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 학기 개시 전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한다.
- ④ 지원자격 및 (편)입학 선발절차는 대학원 학칙, 「공공대학원내규」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부담)

- ① 제2조 제1호에 의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운영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② 제2조 제2호에 따라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산업체 등이 운영계약서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 제10조(계약학과의 폐지 등)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 ②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에 폐지 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

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④ 상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50%이상을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1인의 교육에 필요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의 전근·퇴직 등에 따른 처리)①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권역 외 지역으로 전근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본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③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④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과정)①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본대학원 일반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운영하며, 산업체 등과의 운영계약 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매 학기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30% 이상 수업을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한다.

③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하고, 출석수업의 비중을 50% 이상(학점기준)으로 편성한다.

제13조(휴학, 학점, 성적, 수료, 학위수여 등)① 휴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6주 이상 입원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상급종합병원 진단서 필요)

② 계약학과 수료 및 학위수여에 필요한 요건은 「공공대학원내규」를 준용한다.

③ 계약학과의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당해 계약학과 졸업이 수학점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점인정원을 작성하여 계약학과 주임교수와의 면담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구두 평가서 등 필요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한다.

⑤ 원격수업 교과목의 이수는 졸업학점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제14조(학사관리) 본 대학원은 산업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만족도, 학업성취도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이상되도록 구성하여야 한

다.

제16조(계약학과 자체점검결과 보고, 공시 등)계약학과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 등  
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 학칙 및 「공공대학원내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시행일)2015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 부 칙

본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 부 칙

본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